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85

발의연월일 : 2024. 10. 7.

발 의 자 : 박상혁・정일영・이인영
김남근・한민수・임호선
이연희・최기상・박홍배
김선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입점 사업자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판매대금 지급 등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한편, 「소비자기본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소비자, 가맹사업자, 대리점들은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이들에 대하여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 같이 기존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거래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

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등을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다양한 거래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등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법률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1호 중 “조정”을 “조정 및 상담”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지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1. ----------조정 및 상담
<신 설>	1의2.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지원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